

2023년 8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및 회의록

개 요

- ◆ 일시·장소 : 2023. 8. 18.(금) 10:00~12:10, 서소문2청사 20층 세미나실
- ◆ 참석 : 10명
 - 위촉 위원(5) : 이영주(위원장), 김근주, 김수정, 김영희, 임준규
 - 소관 부서(5) : 시민인권보호관(3), 인권보호팀장 및 담당 주무관

상정안건 : 총 2건

- 보고사항 : 없음
- 의결사항 : 2건(기각 1건, 이유없음(기각) 1건)

심의결과

구분	합계	원안가결	수정가결	재상정
	2건	1건	1건	-
보고사항	-	-	-	-
의결사항	2건	1건 (이유없음 1)	1건 (기각→각하)	-

결과내역

의안번호	사건번호	의안명	상정의견	상정결과
의결사항 : 2건(기각 1건, 이유없음(기각) 1건)				
23-35 (재상정)	23신청-10	노동조합 간부에 의한 인격권 침해	기각	수정가결 (기각→각하)
23-36 (이의)	23이의-6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23신청-13) 권고 결정 이의	이유없음 (기각)	원안가결

의결사항

○ [의안 제23-35호(재)] 노동조합 간부에 의한 인격권 침해

- 23신청-10 (기각→각하) 수정가결
- 6월, 7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공무원 노조 실무교섭 회의록에 대한 내용과 관련해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묻는 과정에서 서로 언성이 높아졌으나 이를 업무 범위로 볼 수 없고 또한 사인 간의 다툼으로 보인다는 의견과 욕설을 한 행위는 인격권 침해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는 의견으로 나누어져서 8월 구제위원회 회의에 재상정함.
- (다수의견)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 3항에 시민인권보호관의 직무범위를 ‘각 호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단순히 사건의 당사자들이 어떤 기관에 소속되어 있느냐를 떠나서 인권침해로 신고된 분쟁이 그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발생한 것으로 직무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본 사건의 해당 행위는 ‘노동조합 사이’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비공식적인 유선상 연락’을 하여 1차 실무교섭 회의록에 대하여 질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 3항의 ‘각 호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각이 아닌 각하로 판단해야 함
- (소수의견) 노동조합은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20조 3항의 ‘각 호 기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대화 내용이 사적인 대화가 아닌 ‘다수노조에 소수노조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 다수노조의 1차 임금협상 내용에 관하여 질의하고 소수노조의 의견을 개진하려는 내용’으로, 해당 행위가 위 ‘각 호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에 해당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질의에 임금 협상 과정은 1차 교섭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절차적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1차 교섭안에 본인들 요구사항을 넣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임금 협상 절차에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음

- [의안 제23-36호] 투지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23신청-13) 권고 결정 이의
 - 23이의-6 (이유없음(기각)) 원안가결
 - 이의신청인은 ○○○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짧은 팀원이 걱정되어서 피해자의 안부를 물은 것이고 음악과 커피에 대한 발언은 그해 마지막 업무 연락에 대한 인사성 말을 한 것으로 일회성이고 성적 의미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 피해자에게 URL을 전송하였으나 무의식적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송 취소 및 삭제 조치에 대한 입증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함.
 - 이의신청인의 3가지 주장은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 관련 자료, 참고인들의 조사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결정을 번복할만한 새로운 증거와 진술은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이유없음’으로 결정을 원안가결함.